



휘발유가격 조정



국내 정유업체는 최근 국제원유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등의 손실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유화유종인 휘발유가격을 社別로 7% 정도 인상조정했다.

油公(대표 金恒德)은 지난 11월 7일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가격을 7.1%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통 휘발유는 ㄹ당 1백79원73전에서 1백92원49전으로, 무연휘발유는 ㄹ당 1백93원11전에서 2백6원82전으로, 고급휘발유는 ㄹ당 2백33원에서 2백49원54전으로 각각 올랐다.

이어 京仁에너지는 11월 9일 極東精油는 11월 10일, 湖南精油는 11월 11일에 각각 세전공장도가격을 7.1% 인상했으며, 雙龍精油는 11월 12일에 6.9~7.06% 인상했다.

이에 앞서 정유업체는 환율 및 원유가 상승에 따르는 금년중 손실요인이약4천1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손실보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두차례에 걸쳐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다음은 油公의 휘발유가격조정 발표내용과 이에 대한 동자부의 의견이다.

'91년도 정유업계 손실부담요인

	보전소요 (억원)	전 액 보 전 필 요 사 유
1. 환 차 손	2,329	
가. 유전스환차손	2,101	○ 과거 유전스 환차익 환수('87~'88) 및 환차손보전('90)시 총원유도입량 기준으로 환차손의 규모를 산정
○ 원 유	1,806	
○ 제 품	295	○ 기금 비징수대상 시장/제품의 가격은 국제가격(또는 연동제)으로 결정되므로 환차손의 가격전가는 현실적으로 곤란
나. 외화차입금 환 차 손	228	○ 정제비 현실화시 환율변동을 예상할 수 없어서 현유가들에의 반영을 유보함에 따른 손실로, ○ 당해 회계년도 발생비용의 년내 현실화가 바람직함.
2. '91. 9~12월 원유도입손실	998	○ 기금부담 자유화 유종에 대하여는 손실보전필요 (걸프사태 손실보전제도 운용 사례) ○ 자유화 유종에 대한 손실보전 제외시 동유종의 가격 인상부담 발생 - 유종간 형평성 위배 - 고시유종 가격 불변상황에서 자유화 유종가격인상은 현실적으로 곤란
3. '91. 상반기 정제비미반영 손실	819	○ 정부의 유가관리상 정제비는 연간 기준으로 관리 - 정제비 정산제도 폐지 및 표준정제비 개념도입 취지에 맞추어 회계년도별 정제비의 유가반영관리 ○ 동손실의 미보전시 정부의 매년도 유가정산 및 정제비 현실화 시점에 따라 정유사 손익이 좌우되는 불합리와 행정의 지의성 문제 초래
'91. 손실부담요인 합	4,146	

주) 상기 손실규모는 년말환율 780/\$, 년말원유비 19\$/B 전제임.

휘발유 가격조정 -油公-

○ 油公(대표 金恒德)은 최근 국제원유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91.11.7 0:00 시부터 휘발유의 세전공장도가격을 7.1% 인상·시행키로 함.

- 보통휘발유 : 조정전 179.73원/ℓ
 조정후 192.49원/ℓ
- 무연휘발유 : 조정전 193.11원/ℓ
 조정후 206.82원/ℓ
- 고급휘발유 : 조정전 233.00원/ℓ
 조정후 249.54원/ℓ

○ 油公은 환율 및 원유가 상승 등에 따른 금년중 손실요인이 약 1,600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타정유사와 함께 정

부에 2차에 걸쳐 손실보전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대해 정부는 물가 및 재원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별도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휘발유 등 자유화 유종에 대하여는 원유도입 손실보전대가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표명하였음. 이에따라 당사는 손실 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자유화유종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 그러나 등유의 경우는 당초 가격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정부의 월동기 민생용 석유제품의 가격동결·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일단 인상을 유보하기로 하고, 추후 국제원유가격 및 제품가격과 환율동향을 보아 가격조정여부를 신중히 검토·결정할 계획임.
○ 이번 가격조정은 지난 9월 1일 정부의 휘발유 가격자유화조치시 공표된 가격관리지침을 따랐으며,

그 구체내역은 中東원유(Dubai & Oman) 평균가격이 9월 18.13\$/B에서 10월 19.18\$/B로 5.8% 올랐고, 월평균 환율은 9월 743.85원에서 10월 753.26원으로 1.3% 올라서 휘발유 국내기준가격의 인상요인이 7.1%로 산정되었음.

- 한편 油公은 향후에도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 등 원가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정부의 가격관리지침에 따라 자유화유종의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임.

정유사의 휘발유가격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이번 油公과 京仁에너지(주)의 휘발유, 등유가격 조정계획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91. 9월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상승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원유수입비용 및 환차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휘발유와 등유의 국내

가격 인상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휘발유와 등유가격이 자유화되어 있어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금번 조정이 가격자유화 이후 최초란 점과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소한도로 조정토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두회사에 11월 5일 제시하였다.

최근 소비가 30%씩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휘발유는 그 증가세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원가변동 이외의 경쟁허용폭(Band)은 제외하고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등 기본인상요인(7.1%) 범위내에서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토록 하고, 중산층 이하가 겨울철에 많이 쓰는 등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과 물가영향등을 감안, 금번 인상에서 제외하여 추후에 인상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업계에 통보했으며, 양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고충을 십분이해하여 이와같은 권고의견을 가능한 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휘발유가격 조정내역

1. 정부의 자유화가격 관리지침('91. 9. 1 가격자유화시)

(1) 휘발유의 내부기준가격

- 국내도입 월평균 원유가격이 17.70\$/B 을 상회하는 시기부터

중동지역 원유가격(DUBAI와 OMAN의 산술평균) 및 환율의 평균 변동율을 적용

- 즉, 금월가격 = 전월가격 × 원유가변동(전월 ÷ 전전월) × 환율변동(전월 ÷ 전전월)

(2) 가격조정을 산정내역

	1991. 9	1991. 10	변동율(%)	비 고
중동원유평균가격(FOB, \$/B)	18,131	19,175	+ 5.76	○ 두바이와 오만의 산술평균
○ 두바이	17,856	18,900	+ 5.85	
○ 오 만	18,406	19,450	+ 5.67	
환 율(₩/\$)	743.85	753.26	+ 1.27	○ 월평균 TTS
원유가격 × 환율(₩/B)	13,487	14,444	+ 7.10	

2. 세전공장도 가격 조정내역

(단위 : 원/ℓ)

	조 정 전	조 정 후	조 정 율(%)	비 고
무연휘발유	193.11	206.82	+ 7.1	○ 정부의 자유화 가격관리지침에 의한 조정율(7.1%) 반영
보통휘발유	179.73	192.49	+ 7.1	
고급휘발유	233.00	249.54	+ 7.1	